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요

- 발 의 자 :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김꽃임 의원 등 13명)
- 발의일자 : 2023년 4월 10일
- 회부일자 : 2023년 4월 11일
- 안 건 명 :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결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의 일탈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안 제2조)
- 월정수당(안 제3조)
- 여비지급기준(안 제4조 ~ 안 제6조)
-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안 제7조)

4.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규정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결일: 2022. 12. 19.)」을 전국 지방의회의 장에게 권고한 사항으로,
-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전액 지급받고 있는 불합리한(의정비 지급 제한 미흡) 규정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적합성

-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가 지속 발생되고 있으나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국회의원에 비해 의정비 전액을 지급받는 등 제재기준이 미흡하였음

< 국회·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등 제재기준 비교 >

구분	국회의원	지방의원
겸직·영리금지 위반	출석정지 90일 이내(의정비 1/2 제한)	출석정지 30일 이내(의정비 제한)
질서유지 의무 위반	의정비 제한○ (출석정지 3개월분, 공개회의 경고·사과 1개월분)	의정비 제한×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구금상태에 있는 지방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제한을 요청(2016. 9. 9.)한 사항으로 243개 지방의회 중 대다수 의회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었으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대부분 추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월정수당 추가 제한규정 개정한 지방의회는 243개 지방의회 중 10개 의회(4.1%)에 불과함. 서울 강동구·관악구, 대구 수성구, 경기 부천시·하남시, 충남 당진시·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남 고성군·함양군

【참고】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2762호('16.9.9.) 공문내용

■ 문서제목: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 요청

- (배경)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비판 여론 고조
- (내용)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하도록 **조례 제·개정 요청**
- (근거)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연봉월액의 70%만 지급

○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 장에게 권고한 지방의원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감액)안에 따르면, 본회의·위원회에 일정 기간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를 포함하여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에도 의정비 등을 감액하도록 개선방안으로 권고한 사항임

< 징계시 의정비 지급 제한 관련 권익위 권고안 및 개정조례안 비교 >

구분	권익위 지급 제한(안)	개정조례안
출석정지 ▶ 일반적인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전액 감액
▶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좌동”
공개회의 경고사과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2 감액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좌동”

- 징계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에 대해 본 개정조례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안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개정조례안 대부분이 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1/2 감액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보다 더 강력한 제재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감액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충청북도의 회 의원의 책임있는 의정활동과 일탈 및 도덕적 해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사료됨
- 이에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권고사항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적합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5. 검토의견

-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결격 사유가 생긴 경우 이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사료되고,

-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제재기준(징계기준)이 미흡하다는 국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의 지적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선제적인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비교표

구분	현행	개정안
<p>제7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p>	<p>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u>제2조 및 제5조, 제6조, 제7조의</u> 규정에도 불구하고 <u>의정활동비 및 여비</u>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u>의정활동비 및 여비</u>를 소급하여 지급한다.</p> <p>< ②항 신설 : 출석정지 ></p>	<p>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 ----- ----- <u>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u>를 ----- ----- ----- <u>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u>를 ----- -----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u>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미지급</u>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u>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u>,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p> <p>1.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p> <p>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p> <p>3.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p>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 ③항 신설 : 공개회의 경고·사과 >	③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